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9. 16 선고 2020나21281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9. 16 선고 2020나212812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8. 12 선고 2019가단119015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우

담당변호사 박구용, 정지웅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아

피고, 피항소인1. K 주식회사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

담당변호사 임재훈

변론 종결2021. 8. 19.

판결 선고2021. 9. 16.

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. 8. 12. 선고 2019가단119015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, D와 피고 K 주식회사가 2016. 9. 8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예약을 50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.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김기현

판사김천수

판사안성민

별지